

서울특별시종로구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04. 12. 15.
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
시 민 행 정 위 원 회

1. 審査經過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4년 9월 8일 · 종로구청장 원안 제출
- 나. 회부일자 : 2004년 9월 8일 원안 회부
- 다. 상정일자 : 제146회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 정례회
제4차 시민행정위원회(2004. 12. 15) 상정 · 의결

2. 提案說明의 要旨 (제안설명자 : 생활복지국장 박 종 인)

가. 제안이유

○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회계관직을 서울특별시 종로구재무회계규칙의
규정에 따라 정비하려는 것임

나. 주요골자

- 의료급여기금의 운용관을 “생활복지국장”에서 “사회복지과장”으로
변경 (안 제4조제1항)
- 기금출납원을 “기금출납업무담당주사”에서 “기금출납담당주사”로 변경
(안 제4조제1항)

3. 專門委員 檢討報告의 要旨

(보고자 : 전문위원 박 성 열) — 별첨 검토보고서 참조

4. 質疑 및 答辯 要旨 (생 략)

5. 討 論 要 旨 (없 음)

6. 修 正 案 의 要 旨 (없 음)

7. 審 査 結 果 : 원안가결

(종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함)